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수산식품부

1. 개정 이유

농업용 면세유의 원활한 공급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홍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면세유관리위원회 운영(제9조 관련)

- (1) 지역조합장은 매년 석유제품별로 농업인에게 면세유류를 배정하고 농업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추가 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농업인 등이 면세유 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우려함.
- (2) 시·군별 면세유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별 면세유류 배정계획, 교육·홍보, 사후관리 등 면세유류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3) 지역조합의 면세유류 공급관리의 투명성·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나. 농업인에 대한 교육·홍보 규정 신설(제11조 관련)

- (1) 농협중앙회가 자체 계획에 따라 지역조합의 면세유 담당자 교육, 농업인 대상 홍보자료 등의 제작·배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2)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면세유류 관련 제도의 변경,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 (3)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대상 교육시 면세유류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농업인 등이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면세유류 사후관리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제12조 관련)

-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면세유류 관리기관(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 면세유류 판매업소, 농업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수

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면세유류 관리 기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3) 지역별 지원·출장소를 두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면세유류 관리의 투명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라. 면세유류 공급기준 현실화 등(별표5, 별표6 관련)

- (1) 고추의 가온기준을 15℃에서 16℃로 상향 조정하고 망고·아보카도 가온기준을 신설하여 18℃로 정함.
- (2) 양계용 면세유류 배정기준을 육계·종계·토종닭으로 세분하고 공급량을 현실화함.

마.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류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한 경우 해당 사업명칭과 수혜농가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그 동안 면세유류를 관리하면서 나타난 미비 규정을 정비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의 신고, 공급기준, 배정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유류 공급대상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농업인”이라 한다.)를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개인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제3조(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 ①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농림특례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농업기계로 별표1과 같다.

제4조(농업기계 등의 신고) ① 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을 포함한다.)가 소재한 면세유류관리기관장(지역조합장)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업기계 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업인 등의 사망·이농 등으로 신고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신규 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업기계에 대하여 변동내역을 신고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양도자와 양수자의 지역 조합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지역조합장은 양도자 관할 지역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업인은 지역조합장에게 매 홀수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농업인이 신고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않은 농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조합장은 농업인이 질병, 해외여행,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등의 확인을 거쳐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농협중앙회장 또는 지역조합장은 농업인이 농업기계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면세유류구입카드의 발급) ① 지역조합장은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신고한 농업인에게 신고 사실의 확인 등을 거쳐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해당 조합이 소속된 시·군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중유·LPG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카드의 발급·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한다.

제6조(면세유류관리대장) ① 지역조합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별로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농가는 경영주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② 읍·면·동장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조사한 동·리별 농업기계 보유현황(폐농기계를 포함한다)을 해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또는 출장소) 및 지역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조합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동·리별 농업기계보유현황 자료 등을 참고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74호, '09. 9. 28)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6] 축산용 용량조건표

1. 양계·오리·메추리

가. 조건표에 사육규모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나. 육용 종계는 사육회당 연료소모량을 양계 사육규모별 연평균 공급량의 10배, 토종닭은 회당 2.4 배 이내에서 배정할 수 있다.

다. 입주시기에 따라 월별로 연료소모량을 가감하여 배정함

라. 가동시간계측기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계측되는 전량을 공급함.

1-1. 양계

구분	계사형태	사육 규모별 연평균 공급량(회)							
		5,000수	10,000수	15,000수	20,000수	25,000수	30,000수	35,000수	40,000수
강원	무창	740	1,480	2,220	2,960	3,700	4,440	5,180	5,920
	개방	860	1,720	2,580	3,440	4,300	5,160	6,020	6,880
충부	무창	580	1,160	1,740	2,320	2,900	3,480	4,060	4,640
	개방	650	1,300	1,950	2,600	3,250	3,900	4,550	5,200
남부	무창	450	900	1,350	1,800	2,250	2,700	3,150	3,600
	개방	490	980	1,470	1,960	2,450	2,940	3,430	3,920
제주	무창	310	620	930	1,240	1,550	1,860	2,170	2,480
	개방	350	700	1,050	1,400	1,750	2,100	2,450	2,800